

증오 및 차별

조장을 막기 위한

제안

공개 토론 문서

목차

법무장관의 소개말	3
제안 요약.....	5
중요/적대감 조장을 막기 위한 제안	5
보다 넓은 범위의 차별에 대한 보호 강화.....	6
제출 방법.....	8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
의견 제출 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8
의견은 법무부 시민공간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8
이메일이나 게시물을 통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8
비밀 보장 및 개인 정보.....	9
궁금한 사항과 추가 질문	9
안전성 염려	10
혐오 표현이나 행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0
배경과 맥락.....	11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
자유로울 권리와 표현할 권리는 보호되지만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12
1993 인권법에는 적대감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2개 있습니다.....	13
현행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15
정부는 여섯 가지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17
제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17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17
와이탕이 조약 고려사항	18
다음 단계	18
본 문서에는 제안에 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한 질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9
법적 변화를 자세히 소개하는 부록이 있습니다	19
중요 조장과 관련된 제안.....	20

선동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 확대	20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고 법률 위반의 결과 강화	22
차별 금지 대책의 적용범위 확대.....	27
본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관련 활동.....	30

법무장관의 소개말

테나 코우토우(Tēna koutou,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튼튼한 이유는 우리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를 집이라 부르는 다양한 사람 덕분입니다.

1993 인권법은 인종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무부의 검토와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 진상 규명' 결과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부는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 조항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제 변화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계획 및 제안을 개선하고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구합니다.

본 정부 제안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에 대한 편협, 편견, 증오를 확산 및 조장하려는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며,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 종교, 성별 등의 공통 특성에 기초하여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포용성 및 다양성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동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가 수호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권리장전(1990)에,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제안의 목표는 이 두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권리장전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제한을 허용합니다.

정부 제안은 선동 관련 조항을 종교집단, 성소수자 공동체 등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집단까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제안은 범죄적 발언의 높은 임계치를 낮추거나 중요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막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우리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를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해치는 행동과 언어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다양성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결속을 독려하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증오 경험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공간에서 안전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분은 더 심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제안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미히(Ngā mihi, 감사합니다)

혼 크리스 파포이(Hon Kris Faafoi)

법무장관

제안 요약

정부는 아래의 모든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원칙적 동의란 제안에 일반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부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최종 결정 및 법제 변화 제안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제안은 여러분께서 주시는 피드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제안의 세부 내용 및 제안 사유는 본 문서의 17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 진상 규명'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응하여 정부가 취하는 조치 중 일부일 뿐입니다. 증오 범죄와 혐오 표현을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활동은 25 쪽에 일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응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른 활동에 대한 정보는 <https://dpmc.govt.nz/our-programmes/national-security/royal-commission-inquiry-terrorist-attack-christchurch-masjid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오/적대감 조장을 막기 위한 제안

선동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 확대

- **제 1 제안:**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더 많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3 인권법의 선동 관련 조항의 표현을 변경한다.
 - 현행 인권법은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을 이유로 특정한 방식으로 증오 선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보호합니다.
 - 제 1 제안은 개인의 특징을 이유로 증오 선동의 대상이 되는 더 많은 집단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행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근거는 인권법 제 21 조에 나열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부록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결과 강화

- **제 2 제안:** 1993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의 범죄 규정을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인 1961 범죄법의 새로운 범법행위 조항으로 교체한다.
 - 제 1 제안에서 나열한 특성을 이유로 증오를 의도적으로 조장, 선동, 유지 또는 일반화하는 사람이 (폭력 조장을 포함하여) 위협, 학대, 모욕을 이용하는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위협, 학대, 모욕 방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법률 위반이 될 것입니다. 구두, 서면(그림이나 글), 온라인(소셜 미디어, 이메일, 디지털 메시지 등)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든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 **제 3 제안:** 심각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최대 3 개월 구속 또는 최대 \$7,000 벌금에서 최대 3 년 구속 또는 최대 \$50,000 벌금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 **제 4 제안:** 형사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선동 관련 민사 규정의 표현을 변경한다.

보다 넓은 범위의 차별에 대한 보호 강화

- **제 5 제안:** “차별 조장”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되도록 민사 규정을 변경한다.
 - 법률로 보호되는 특징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법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호 대상 집단의 구성원을 더 나쁘게 혹은 다르게 취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는 사람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제 6 제안:** 성전환자, 성다양성자, 간성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권법에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한다.
 - 현행법에서 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납니다. 정부는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징 또는 간성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보다 분명한 법률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의 성 및 성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것입니다.

제출 방법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본 문서에 소개한 제안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집단 및 사람의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피드백 및 개선을 위한 제안은 정부의 최종 결정에서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토론 문서에서는 인권법의 선동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는 25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입니다.

정부가 법률 개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선택위원회 절차 기간에 수정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의견은 법무부 시민공간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공간은 <https://consultations.justice.govt.nz>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안에 관한 피드백을 쉽게 제출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메일이나 게시물을 통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humanrights@justice.govt.nz로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Human Rights, Ministry of Justice, SX10088, Wellington 으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 보장 및 개인 정보

1982 공공정보법에 의거하여 사법부에서 여러분께서 주신 피드백과 관련해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및 주소 등의 개인 정보는 1982 공공정보법에 따라 비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 중 공개를 원치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는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유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의 견해를 고려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2020 프라이버시법은 여러분에 관한 정보와 여러분이 제공하신 정보를 법무부가 수집, 보유, 이용, 폐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여 이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출 요약물 사전에 공개할 것입니다. 요약물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과 추가 질문

의견 제출을 위한 검토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웹사이트 www.justice.govt.nz/proposals-against-incitement-of-hatred-and-discrimination 를 방문하거나 humanrights@justice.govt.nz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견 제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 제출을 막는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민공간, 이메일, 게시물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안내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염려

본 토론 문서는 증오 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담긴 의견 제출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는 드러내지 않을 것을 조언드리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마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혐오 표현이나 행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어디에서 정보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이 위험해졌다고 느껴질 때는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응급상황인 경우 111로 전화하시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105로 전화하십시오.
-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도움에 관한 정보는 <https://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how-make-compla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 인종 차별 관련 정보는 <https://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faqs/racially-offensive-comments/>를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https://www.netsafe.org.nz/>를 확인하십시오.
-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1737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배경과 맥락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요?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법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민족성, 종교 또는 성적 취향 등의 공통된 특성에 기초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입니다.

본 문서에서 소개하는 제안들은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과 구체적으로 관련됩니다

본 문서의 제안과 현행 인권법 조항은 타인에게 어떤 집단을 향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에 집중합니다. '증오를 선동/조장'하는 발언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 특징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 아닌) 해당 집단을 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또는 위협적 발언입니다.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평등성, 다양성, 존중, 공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증오 선동은 증오의 표적이 되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해롭습니다. 선동적인 증오는 적대감 유발, 사회 통합 저해, 공동체 내 불신 및 분열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해칩니다.

국제인권조약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제를 요구합니다

증오 선동은 국제인권조약으로 금지됩니다. 우리 아오테아로아는 인종 혐오 표현 금지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가입국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도 타인에게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결과에 이르는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증오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증오 선동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안전해지고 증오 선동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해로운 행동이라는 메시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민법과 형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지만, 법률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려 중인 제안의 세부 내용은 17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안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토론 문서의 목적은 정부 제안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부 제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 및 제안을 구합니다.

정부는 이 주제에 관한 대중의 관심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울 권리와 표현할 권리는 보호되지만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뉴질랜드 권리장전(1990)의 제 14 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정보와 의견을 추구하고 듣고 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1948 년 세계인권선언문과 ICCPR 에서 확약됩니다.

권리장전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 및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오테아로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 및 이해 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등급제도는 유해할 수 있거나 사회의 규범에 반하는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및 다른 대중 구성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창작자와 관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1993 인권법에는 적대감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2개 있습니다

선동 관련 조항은 민사 규정과 형사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민법 체계는 개인, 조직, 그리고 일부의 경우 지방정부나 중앙 정부 사이의 사적 분쟁을 다룹니다. 분쟁은 계약, 부채 또는 과실 등의 행동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끼친 손해나 손상을 바로잡고 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법 체계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처벌, 억제, 공개 비난을 통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형사 사건은 주로 국가가 사회를 대신하여 개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인종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한 선동 관련 민사 규정

인권법의 민사 규정(제 61 조)은 다음 2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서면 또는 구두 방식의 용어를 사용, 출판, 방송 또는 배포하는 행위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협적, 학대적 또는 모욕적임, 그리고
2. 피부색, 인종, 민족성, 국적을 토대로 어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거나 멸시할 가능성이 있음

누군가 61 조에 명시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권위원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집단을 향한 것이 아닌 발언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해당 민원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중재가 거절되거나 민원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민원 호소인은 인권심의심판소(심판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심의심판소는 청문회를 열고 이용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권심의심판소는 61 조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교정하기 위한 개선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의 법률 위반 선언, 위반의 지속 또는 반복을 막기 위한 피고에 대한 금지 명령, 최대 \$350,000의 피해 보상금 부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1 조 전문은 부록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종 간의 불화 선동에 대한 형사 규정

인권법의 형사 규정(제 131 조)은 서면 문건을 출판, 방송 또는 배포하거나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종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형사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협적, 학대적 또는 모욕적임
2.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악의를 자극하거나 경멸 또는 조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3. 그러한 적대감이나 악의, 경멸 또는 조롱을 촉발하는 것을 의도함

이러한 위법 행위는 최대 3 개월의 구속이나 벌금 \$7,000 에 처할 수 있습니다. 131 조에 의거하여 기소된 사람은 지방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131 조 전문은 부록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동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한계입니다

선동에 관한 민사 규정과 형사 규정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구성합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려는 시도(제 131 조)가 그러한 의도가 없는 발언(제 61 조)보다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선동 관련 조항은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 수 있거나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하는 발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 및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조장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민주적 원칙과 상충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족성, 종교 또는 성적 취향 등의 공통 특성으로 인해 일부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집단은 같은 권리를 가져서는 안되며 다르게 대우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평등권,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단체 결사의 자유 등 표적 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오 선동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 생활 참여를 막고 사회에 포함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종류의 발언은 민법과 형법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제한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혐오 표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1981 약식기소범죄법, 2015 유해디지털통신법, 1997 괴롭힘금지법, 1993 영화, 비디오, 출판물 등급분류법이 몇몇 유해한 발언에 적용됩니다.

본 토론 문서에서는 인권법의 선동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는 25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수행한 검토와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 진상 규명'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규정상의 몇몇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형사 규정의 문구가 불분명합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형사 규정의 문구가 법률로 금해야 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해 충분히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현재의 문구가 과도하게 복잡하다고 명시하고 극단적인 발언만 포착되도록 문구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민사 규정의 문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파악했지만 권고사항에서는 형사 규정에만 집중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형사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며 민사 규정과 달리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현행법 규정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부 검토서와 왕립조사위원회 보고서 모두에서 현행 규정이 인종, 국적, 민족성, 피부색만을 집단에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집단에 대한 용어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권법 제 21 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 13 개 중 4 개만 있습니다.

차별 금지 사유란 하나 이상의 제한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나열된 특성에 근거한 차별은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1 조 전문은 부록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몇몇 집단이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격차입니다. 그러나 다른 집단도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법무부 검토서와 왕립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3개월 구속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도적 증오 선동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는 여섯 가지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제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 제안은 앞에서 파악한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증오 선동 발언으로부터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몇 변경사항은 왕립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제안서에 담긴 모든 변경사항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원칙적 동의란 제안에 일반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서에 담긴 변경사항은 증오 선동 발언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에 대한 사회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할 때 및 때로는 범죄화해야 할 때를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은 ICCPR에 따른 우리의 국제인권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2019년 1월 뉴질랜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유엔 인권 이사회, 2018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종 결정에 앞서 이러한 제안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고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혐오 표현 관련 활동

2019년, 법무부와 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의 경험과 견해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해당 집단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내용은 본 문서에 담긴 제안을 마련하는데 정보로 사용되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 진상 규명 결과 보고서 관련 활동

왕립조사위원회의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 진상 규명' 결과 보고서는 2020년 12월 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2021년 1월과 2월 중에 왕립조사위원회

수석 조정관 Hon Andrew Little 과 다양성·포용성·민족공동체 본부장 Hon Priyanca Radhakrishnan, 다양한 정부기관 관료들이 아오테아로아 전역의 무슬림 공동체와 다양한 신념 공동체 및 민족공동체와 33 회에 걸쳐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정부가 주된 염려와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 이행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향후 정부 및 정부기관의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협력할 방법을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에서는 많은 사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등장했던 주제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혐오 표현, 혐오 범죄, 혐오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법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탕이 조약 고려사항

와이탕이 조약은 인권법과 본 문서에서 소개하는 제안의 선동 관련 조항 및 차별 금지 대책과 관련됩니다. 마오리족은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이라는 근거에 따라 선동 관련 조항에서 현재 다루지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담긴 제안에서는 마오리족을 포함한 민족 집단을 증오 선동 발언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른 차별 금지 사유(예: 타카타푸이(Takatāpui) 관련)가 마오리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분석한 후 제안된 변경사항을 그대로 적용할지, 주신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할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지 판단할 것입니다.

수렴된 의견을 요약하여 발표할 것이며,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한 정보는 올해 안에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문서에는 제안에 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한 질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여섯 가지 제안을 다루고 개별 제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제공됩니다. 모든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어떤 것입니까?
- 정부 제안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변화를 자세히 소개하는 부록이 있습니다

정부 제안은 아래에 일반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개별 어휘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 및 해당 어휘로 어떻게 특정한 행위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인권법 개정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어휘상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후반부의 부록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오 조장과 관련된 제안

선동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 확대

1

제 1 제안: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더 많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동 관련 조항의 표현을 변경한다.

현행법 규정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 기원”을 이유로 어떤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발언에만 선동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 기원”뿐 아니라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장애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집단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증오 선동 역시 잘못된 것이며 민사 및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립조사위원회도 선동 관련 조항에 종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제안의 목적

제 1 제안은 인권법을 통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더 많은 집단에 선동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 기원”에 기반한 집단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인권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 또는 적대감을 조장하는 발언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성, 성별(성 정체성 포함), 종교적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다른 이유로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집단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호해야 하는 집단에 대한 견해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 다른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작성하고 공통 특징을 토대로 어떤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나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제 1 제안에 대한 피드백

- 선동 관련 조항을 이런 식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집단을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떤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1 제안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혐오 표현을 경험하게 될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고 법률 위반의 결과 강화

2 제 2 제안: 기존의 형사 규정을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인 범죄법의 새로운 범죄행위 조항으로 교체한다

현행법 규정

앞서 본 문서의 12 쪽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의도적으로 “인종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을 인권법 제 131 조를 통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규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대감(hostility)”, “악의(ill-will)”, “경멸(contempt)”, “조롱(ridicu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들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극하다(excite)”라는 단어도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본 규정이 민사 규정과 달리 전자 통신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의 목적

제 2 제안은 인권법 제 131 조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형사 규정을 범죄법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적대감”, “악의”, “경멸”, “조롱”이라는 용어는 “혐오(hatred)”로 교체될 것입니다. 이 어휘는 왕립조사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면 현행 규정보다 어휘의 의미가 좁아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의 정확한 어휘는 추후 자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동/조장(incite)”, “불러일으키다/유발하다(stir up)”, 혹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입니다.

제 2 제안에서는 혐오를 조장 또는 유발하는 발언뿐 아니라 혐오를 유지하거나 정상화하는 발언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미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불법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2 제안은 (전자매체를 통한 표현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의사소통 표현 방식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 2 제안은 극단적인 혐오 표현만 불법화하고 어떤 집단에 대한 타인의 혐오를 발전시키거나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입되는 새로운 범죄 조항은 중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1961 범죄법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제 2 제안의 문구에는 보호 대상 집단의 확장이 포함됩니다. 선동 관련 조항을 통해 보호해야 할 집단은 제 1 제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제안에 대한 피드백

- 형사 규정의 문구를 제 2 제안에 따라 변경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간단해져서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 o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 2 제안을 통해 새로운 범죄 조항에 의거하여 불법이 될 행동 유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제 3 제안: 범죄의 심각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3 년 구속 또는 최대 \$50,000 의 벌금으로 높인다

현행법 규정

범죄적 선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현행 처벌(즉, 형벌)은 최대 3 개월 구속 또는 최대 \$7,000 의 벌금입니다.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정부는 새로운 형사 규정에서 다루는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및 다른 범법행위와 비교할 때 현행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왕립조사위원회 역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말하며 최대 구속 기간을 3 년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의 목적

제 3 제안은 새로운 범법행위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를 3 년 구속 또는 \$50,000 까지의 벌금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범죄 규정에서는 사회 내 집단을 향한 혐오 확산을 추구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을 향한 혐오 확산을 추구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볼 만한 범죄 및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81 약식기소범죄법 제 3 조의 난동 범죄에 대한 처벌 - 최대 3 개월 구속 및 \$2,000 벌금
- 2015 유해디지털통신법 제 22 조의 유해한 디지털 통신 내용을 게시하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 최대 2 년 구속 또는 \$50,000 의 벌금
- 1961 범죄법 제 306 조의 살인 또는 중상해 협박죄에 대한 처벌 - 최대 7 년 구속
- 1993 영화, 비디오, 출판물 등급분류법 제 124 조의 불쾌한 출판물을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최대 14 년 구속

제 3 제안에 대한 피드백

- 제 3 제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4 제 4 제안: 형사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선동 관련 민사 규정의 표현을 변경한다.

현행법 규정

앞서 11 쪽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인권법 제 61 조는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 기원”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멸을 조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민사 규정입니다.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제 2 제안을 이행하게 되면 형사 규정과 민사 규정에서 사용되는 문구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혐오 조장 또는 선동”과 “적대감 유발 또는 멸시”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증오 선동에 대한 소를 민사 규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 규정과 형사 규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제안의 목적

제 4 제안은 기존의 문구와 더불어 “혐오 조장/선동, 유지 또는 정상화”라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선동 관련 민사 규정의 어휘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과 관련된 민사 규정과 형사 규정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의사소통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민사 규정에 “혐오”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제안에서 민사 규정에 대한 변경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민사 규정의 문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집행 관련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혐오 선동 이외에도 적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민사 규정에 다른 변경사항을 도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4 제안에 대한 피드백

- 제 61 조의 어휘를 변경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 o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민사 규정 중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차별 금지 대책의 적용범위 확대

정부는 인권법의 차별 금지 관련 법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

제 5 제안: “차별 조장”이 불법이 되도록 민사 규정을 변경한다

현행법 규정

61 조에는 “차별 선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ICCPR에서는 “차별이나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혐오를 옹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ICCPR에 서명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차별 선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5 제안에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변화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법률을 ICCPR 규정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안의 목적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차별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인권법에서 불법행위가 되고 혐오 조장 규정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민족성, 성별 등의 특성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나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제안과 마찬가지로, 민사 규정의 문구가 변경될 것입니다.

제 5 제안에 대한 피드백

- 제 61 조에 차별 선동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 o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제 6 제안: 성전환자, 성다양성자, 간성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권법에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한다

현행법 규정

인권법의 차별 금지 근거 목록에는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성”과 “이성애, 동성애,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 지향성을 의미하는 성적 지향성”이 포함됩니다.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정부는 현행 규정이 성전환자와 성다양성자, 간성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성” 근거가 이러한 집단에 적용되지만 “성”과 “성별”은 다른 개념이므로 법률에서 더욱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의 목적

제 6 제안은 성전환자와 성다양성자, 간성자에 대한 보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권법에서 차별 금지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성징 또는 간성 상태”가 포함되도록 “성(sex)”의 근거 문구를 변경하고, “성 표현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성별”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별, 성 표현, 성 정체성, 성징 또는 간성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불법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 다양성을 대신해 “성징 차이”, “남성도 여성도 아님”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와이탕이 조약은 제 6 제안과 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타카타푸이(Takatāpui) 및 다른 문화적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카타푸이(Takatāpui)는 '친밀한 동성 동반자'라는 의미의 전통 용어입니다. 남성 신체를 가진 여성(whakawāhine), 여성 신체를 가진 남성(tangata ira tāne),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자, 동성애자 등 다양한 성별 및 성적 취향을 가진 모든 마오리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재등장했습니다.

제 6 제안은 혐오 조장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1 제안에 따라 선동 관련 조항을 통해 성전환자, 성다양성자, 간성자까지 혐오 조장 발언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규정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 제안의 주된 목표는 인권법 21 조에서 적절한 용어가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근본적인 법률상의 변화가 아니라 현 상태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제안에 대한 피드백

- 제 6 제안에서 도입하려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집단을 제 6 제안을 통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카타푸이(Takatāpui)와 같은 문화적인 성 정체성을 제 6 제안을 통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본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관련 활동

본 토론 문서는 광범위한 정부 활동 중 구체적인 측면 하나에 집중합니다.

정부는 왕립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응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몇 활동은 왕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혐오 표현, 인종차별주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 혐오 관련 범죄를 정확하게 파악, 기록, 보고 대응하기 위한 경찰 주도 활동
- 혐오 범죄 관련 법무부 활동
-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활동
- 영화, 비디오, 출판물 등급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불쾌한'이라는 용어의 정의 변경
- 민족공동체를 위한 결과를 향상하기 위한 민족공동체부 창설
-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활동 계획 수립
-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